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1090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강창식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대

변론 종결2021. 12. 15.

판결 선고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2018. 11. 20. 체결된 200,236,273원의 증여계약 및 2019. 1. 17. 체결된 39,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239,236,27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지급

원고는 2018. 11. 16. 피고 B와 사이에 제천시 D 소재 E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 등 운영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투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고 B이 2018. 11. 19. 원고에게 28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가 같은 날 곧바로 다시 원고가 위 피고에게 2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 및 F 사이의 부동산 거래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으로 2018. 2. 1.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4억 원에 매수하고, 2019.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2018. 11. 20. 피고 C을 위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200,236,273원을 G에게 송금하였고, 2019. 1. 17. 피고 C에게 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20. 1. 3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부동산 가압류

한편 원고는 2019. 3.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카합10으로 "원고가 2018. 11. 16.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도금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서에 피고 C을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원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2018. 11. 19.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6. 가압류결정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F 사이의 합의 및 3억 원 수수

그 후 F이 위 나.항과 같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와 F은 2020.

7. 7.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와 F, 주식회사 H(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 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F과 H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대가로 총 3억 원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가. 1억 원은 2020. 7. 7.까지 지급한다.

나. 1억 원은 2020. 12. 30.까지 지급한다.

다. 1억 원은 2021. 6. 30.까지 지급한다.

2. 1회 지급을 완료하고 F과 H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회 및 3회 지급할 금액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신청을 취하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과 H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같은 날

F으로부터 1억 원, 같은 해 10. 29. 1억 원, 2021. 7. 15. 1억 원 합계 3억 원을 3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그 중 3회차 지급금은 F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사무소로 하여 2021. 2.

8. 설립된 의료법인 I(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20. 7. 10.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달 14.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원고는 같은 달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 내지 15호증, 을가1, 2호증, 을나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3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B은 2018. 11. 20. 및 2019. 1.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합계 239,236,273원(2018. 11. 20.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송금된 200,236,273원 +
2019. 1. 17. 피고 C에게 송금된 39,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수익자로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39,236,27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F 및 소외 의료법인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3억 원은 피고 B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가 아니고, F은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 F이 원고에게 그 3억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의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고,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이상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지급채무(원고는 이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단순 차용금채무라고 주장한다)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본인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추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압류 해지서류와
취하서를 받았을 뿐 피고 B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본인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대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3억 원을 피고 B과 더불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서에서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에게 동액의 금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가압류채무는 피고 C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거나 피고 B의 투자금반환채무 내지는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사실상 그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F은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채무 3억 원을 이자 없이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그 3억 원 전액을 변제한 점(F이 2회차 지급 후 설립한 소외 의료법인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한 3회차 지급금 역시 지급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대표자인 F의 의사에 기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라고 할 것이다), ③ F은 등기부 기재는 물론 피고 C과의 매매계약 체결¹⁾ 및 원고와의 이 사건 합의과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압류채무의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피고 C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F에게는 가압류 말소에 관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묵시적이라도 그와 같은 변제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이 사건 합의에 기한 변제는 민법 제469조에 의한 제3자의 변제²⁾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압류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F이 그 가압류채무가 본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채무자인 피고 C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제3자의 변제로 소멸한 이상 그와 목적이 동일하거나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상인 피고 B의 투자금반환채무 내지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무자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대위변제로 소멸한 이상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관제

판사정원석

판사최정원

별지

1) F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선행한 피고 C과의 매매대금 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가압류채무의 공제 등이 고려되었을 여지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 이전부터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C을 상대로 대여약정 등 이 사건 가압류신청서와 동일한 주장을 할 경우 피고들이 제3자의 변제를 항변할 것을 염두에 두고 피고 C에 대한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